

	공무원아카데미센터운영규정	규정번호	3-7-34
		제정일자	2025.01.01
		개정일자	-
		개정차수	-
		소관부서	공무원아카데미센터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공무원아카데미센터(이하 “센터”라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공무원수험정보 제공
2. 공무원 공통 교과목(영어, 국어, 한국사 등) 프로그램 운영
3. 공무원특강 운영
4. 공무원 수험에 관한 정보수집과 분석
5. 전일제학습 운영
6.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

제2장 조직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, 센터의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4조(구성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공무원아카데미센터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제5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센터 운영·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센터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5장 보 칙

제9조(세부사항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수행된 사항은 이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